

오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오산시 영유아보육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0일

오 산 시



1. 개정이유

-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해결안 모색 필요
- 기존 법정 저소득층에 한정 지급하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생애최초 어린이집 신규 입소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여 출산율 제고 및 보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오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4조(비용의 보조) 16항 신설
 - 「생애최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」에 따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생애최초 어린이집 신입 원아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비용의 보조 제24조 16항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: 2023년 11월 9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홈페이지 등

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라. 제출기관: 오산시 가족보육과

· 우편번호: 18132

· 주 소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청)

· 전 화: 031)8036-7503

· F A X: 031)8036-8913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 오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소 관 부 서		가족보육과
입 안 자	부 서 장 직위·성명	가족보육과장 이 명 숙
	팀 장 직위·성명	보육지원팀장 구 미 영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광 우 (8036-7503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비용의 보조)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4조(비용의 보조) (현행과 같음) <u>16.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</u>